

2023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기본계획(안)

본 기본계획은 전형 전까지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본교입학정보 홈페이지의 최종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KNU

경북대학교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1. 원서 접수 및 전형일정(예정)

가. 원서접수(인터넷 접수) : 2022년 9월

나. 면접구술 및 실기고사 : 2022년 10월 말

다. 합격자 발표 : 2022년 11월

※ 순수외국인(화교 제외) 및 전교육과정 이수 외국인은 국제교류처에서 모집

2.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가. 총 입학정원의 2%이내 모집하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

구 분	자 격 요 건	학 력 요 건	최저 국외 재학, 재직, 체류기간(년)							
			학생			보호자			배우자	
			재학	거주	체류	재직	거주	체류	거주	체류
국외근무자의 자녀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를 졸업(예정)한 자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외국소재 고교 졸업자 2. 외국소재 고교에서 국내고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를 졸업한 자	3	3	3/4 이상	3	3	2/3 이상	3	2/3 이상

※ 국외근무자의 정의 : 역년으로 통상 3년 이상의 국외에서 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

나. 입학정원 제한 없는 정원외 모집

구 분	자 격 요 건	학 력 요 건
전 교육과정 이수자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외국소재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전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예정)한 자
순수외국인 중 화 교	부모 모두가 화교인 화교학생	국내·외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초·중등 교육법시행령에 의해 교육감이 학력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및 국내외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검정고시 출신자 등 본교 입학본부에서 지원자격이 있다고 판단한 자

다. 지원자격 관련기준 및 해설

□ 입학 허용기간

- 자격 및 학력 인정기준시점은 본교 입학하는 날이 속하는 학기개시 전일(2023년 2월 28일)로 함. 다만, 해당 국가의 학제상 학년도와 학기 개시일이 우리나라보다 1개월이 늦은 국가(일본 등)는 1개월의 재학 예정기간 범위 내에서 외국 학교 재학 기간만을 예외적으로 초과 인정
- 고교 졸업학년도가 시작된 날(3학년 1학기 초)부터 2년 6개월 이내(2개 학년도만 허용, 8월에 3학년 1학기가 시작될 경우 2년 7개월 이내에서 허용). 다만, 군복무필자의 경우 군복무기간은 입학허용기간 제한 기간에서 제외
예) 2021년 3월(이전) 졸업자 : 지원불가, 2021년 4월 이후 졸업자 : 지원 가능
- 북한이탈주민 및 전교육과정 이수자 중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주민은 입학 허용기간 미적용

□ 국외근무자 및 자녀의 세부 지원자격

▷ 국외근무자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이상의 국외근무자/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
※ 영주권이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국외에서 재직(현지취업 및 자영업 포함)해야 함

- 국외 파견 재직자의 범위

- 국외상사직원, 국외파견 공무원, 언론기관 특파원 등
- 선교사의 경우 국내에 법인으로 등록되어 해당 법인에서 발급된 재직증명서(선교국 및 국외 파견기간 명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

※ 국외 파견 재직자의 경우, 근무 및 주거문제 등의 사유로 출국이 늦어졌거나 조기귀국으로 인한 부족기간은 국외 근무발령기간 전후 15일 이내에서 인정

- 현지 취업자의 범위

- 국외에서 직접 고용되어 재직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취업자
- 외국에 소재한 국내기업이라도 현지에서 직접 채용된 경우

- 현지 자영업자의 범위

- 국외 세금납부증명서를 제출 할 수 있는 경우

▷ 국외근무자의 자녀 :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3년(1,095일)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 국외 재학 기간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 1개 학년이 4quarter제로 운영되는 학교는 1,2quarter를 이수해야 1학기로 인정하며, 3,4quarter를 이수해야 2학기로 인정함(4quarter를 모두 이수해야 1개 학년으로 인정)
-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한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 거주기간의 인정 기준

재학 또는 근무를 위해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 출입국 사실 증명서상 해당국의 최초 입국일과 최종 출국일을 기준으로 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학에서 판단함

단, 학생의 경우 수업의 결손 없이 6개 학기를 모두 이수하는 동안 해당국에 거주할 경우 거주기간으로 인정함

□ 국외 체류 기간의 인정 기준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국외 재학기간이 3년인 경우, 보호자는 학생이 국외에서 재학하는 마지막 학기(6학기)종료일 전에 귀국할 수 없음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구분	내용
학생 이수기간	-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
체류기간	- 학생 : 학생 이수 기간의 3/4이상 - 부모 : 학생 이수 기간의 2/3이상
국외근무자 재직기간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

□ 재학 및 국외수학 연한 인정 기준

- 동일학년(학기) 중복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누락 학기를 보충하는 학교과정으로는 인정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으나,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된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만 대체가능
-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학이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예시 1) 중복과 관련된 지원자격 충족 사례

[D: 국내학교, A: 외국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기간	D	D	D					D	D	D	D	D	D				D	D	D					
				누락	A	A	A	A					A	A	A	A	누락				누락	A	A	A

중복학기 G4-2로 G2-2 대체 가능

중복학기 G7-1로 G9-1대체 가능

G11-1 학제 차이로 인한 누락으로 인정

예시 2) 중복과 관련된 지원자격 미충족 사례

[D: 국내학교, A: 외국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재학기간	D	D	D	D	D						D	D	D	D				D	D	D				
				A	A	A	A	누락	누락				A	A	A	A	누락				누락	A	A	A

중복학기 G2-2~G3-1 중 한 개 학기만 G4-2~G5-1 한 개 학기 대체 가능

중복학기 G7-1로 G9-1대체 가능

G11-1학제 차이로 인한 누락으로 인정

□ 전교육과정 이수자 자격

- 국외 1개국 내 학제가 동일한 학교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자
 - 외국에서 초등학교를 신입학하여 초·중·고 교육과정을 모두 외국에서 이수한 경우, 국내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하나, 국내학교 이수를 통해 외국학교 부족 학기를 채운 경우(예,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국내학교 재학 후, 외국초등학교 1학년 2학기로 편입한 경우 등)에는 지원이 불가함
-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고·대학과정과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인정
(초등학교 과정 : 외국의 1~6학년 과정, 중학교 과정 : 외국의 7~9학년 과정, 고등학교 과정 : 외국의 10~12학년 과정)
 - 13학년 학제의 경우 13학년을 마치고 졸업장을 취득한 경우에 고등학교 졸업자격 인정
 - 초·중·고 학제가 12년 미만인 국가 출신자의 경우, 1개 국가에서 초·중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해 전 교육과정 이수 지원자격을 인정하며, 2개국 이상에서 초·중등 과정을 혼합 이수한 경우 다음과 같이 인정함

학년제	인정여부 및 인정조건	비고
10학년 이하	미인정	다만,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당해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11학년제	-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12학년제	-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13학년 이상	- 10학년~12학년 또는 11학년~13학년을 당해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부족한 학교교육과정 : 당해국 학년제의 총 이수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간의 차이 년 수

- 지역 간 학제 차이 등으로 발생하는 재학기간의 부족분은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인정
- 당해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한 수업연한 단축은 예외적으로 인정

□ 외국학교 인정기준

- 해당국의 교육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설립·운영되는 초·중등교육과정의 정규학교(국내소재 외국인 학교는 외국학교로 인정하지 않음)
- 부모의 근무국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다만, 부모 근무국의 지역 · 종교 · 이데올로기 등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모의 근무국이 아닌 제3국 소재 학교는 예외적으로 인정)
- 해당국의 교육관계법령 등에 의거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초·중·고·대학과정의 학교만 인정하고, 유아원·유치원, 검정고시,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 홈스쿨링 및 사이버학습 등은 제외

□ 기타사항

- 국외 근무기간 및 체류기간은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출입국 사실증명서, 국외근무서류, 재학기간 증명서류 등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함
- 기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및 지원자격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3. 전형요소 및 배점

유 형 구 분	모집단위	전 형 요 소				비 고
		면접 구술	서류 전형	실기	포트 폴리오	
- 재외국민 등 - 순수외국인 중 화교	전 모집단위 (예능계 제외)	100				최저학력 기준 : 전형 총점의 60%이상
	음악학과 국악학과 디자인학과			100		
	미술학과			80	20	

4. 심층면접(면접구술고사)

고 사 내 용	배점	평 가 기 준	면 접 방 법
제1영역 (품성 및 표현력)	20점	- 품성과 태도 : 면접자세, 답변의 충실도 - 의사소통능력과 표현력 : 의사전달능력, 언어구사 능력, 어휘의 사용 및 어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수험생이 작성한 전공수행 기초능력 평가자료와 답변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제2영역 (전공수행 기초능력)	80점	- 전공관련지식 : 지원분야 전공수행을 위한 기초지식 - 문제해결능력 : 문제해심파악능력, 창의적 사고력과 지식을 문제나 상황에 적용시키는 능력, 문제해결 과정의 논리성 등을 평가	
계	100점		

- 면접 전 1시간동안 전공수행 기초능력에 대한 면접구술고사자료(모집단위별 전공수행 기초능력 측정 자료로써 국내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 작성 후 면접 실시
- 면접은 블라인드 형식으로 진행. 면접 진행 시 본인의 인적사항 및 신상에 관한 사항을 언급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면접구술위원 3인이 수험생 개인별 면접구술고사자료를 토대로 구술에 의한 심층면접을 실시
작성한 면접구술고사자료 내용 및 심층면접 답변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3명의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반영

5.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단과대학	모 집 단 위	모집인원	최대선발가능인원	비 고
인문대학	국 어 국 문 학 과	약간명	3	
	영 어 영 문 학 과	"	6	
	사 학 과	"	3	
	철 학 과	"	2	
	불 어 불 문 학 과	"	2	
	독 어 독 문 학 과	"	2	
	중 어 중 문 학 과	"	2	
	고 고 인 류 학 과	"	2	
	일 어 일 문 학 과	"	2	
	한 문 학 과	"	2	
	노 어 노 문 학 과	"	2	
사회과학대학	정 치 외 교 학 과	"	2	
	사 회 학 과	"	2	
	지 리 학 과	"	2	
	문 헌 정 보 학 과	"	2	
	심 리 학 과	"	2	
	사 회 복 지 학 부	"	5	
	신 문 방 송 학 과	"	2	
자연과학대학	수 학 과	"	3	
	물 리 학 과	"	5	
	화 학 과	"	4	
	생 명 과 학 부 (생 명 공 학 전 공)	"	8	
	생 명 과 학 부 (생 명 공 학 전 공)	"	3	
	통 계 학 과	"	3	
	지 구 시 스 템 과 학 부	"	8	
경상대학	경 제 통 상 학 부	"	13	
	경 영 학 부	"	10	

단과대학		모 집 단 위	모집인원	최대선발가능인원	비 고
공과대학		신 소 재 공 학 부	약간명	7	
		기 계 공 학 부	"	12	
		건 축 학 부 전 축 학 전 공	"	4	
		건 축 학 부 건 축 공 학 전 공	"	4	
		토 목 공 학 과	"	5	
		고 분 자 공 학 과	"	4	
		섬 유 시 스 템 공 학 과	"	3	
		에 너 지 공 학 부	"	2	
농업생명 과학대학		응 용 생 명 과 학 부	"	8	
		식 품 공 학 부	"	9	
		산 림 과 학 · 조 경 학 부	"	7	
		원 예 과 학 과	"	3	
		농 업 토 목 · 생 물 산 업 공 학 부	"	4	
		바 이 오 섬 유 소 재 학 과	"	2	
		농 업 경 제 학 과	"	2	
예술대학		음 악 학 과	"	5	
		국 악 학 과	"	2	
		미 술 학 과	"	4	
		디 자 인 학 과	"	2	
사범 대학	인문	교 육 학 과	"	제한없음	[지원자격] 전교육과정 이수자, 화교, 북한이탈주민
		유럽어교육학부(독어교육전공)	"		
		유럽어교육학부(불어교육전공)	"		
		역 사 교 육 과	"		
	자연	수 학 교 육 과	"		
		물 리 교 육 과	"		
		지 구 과 학 교 육 과	"		
생활과학대학		아 동 학 부	"	4	
		의 류 학 과	"	2	
		식 품 영 양 학 과	"	2	

단과대학	모 집 단 위	모집인원	최대선발가능인원	비 고
간호대학	간 호 학 과	약간명	11	
IT대학	전 자 공 학 부	"	33	
	컴 퓨 터 학 부	"	10	
	컴 퓨 터 학 부 (글로벌소프트웨어융합전공)	"	10	
	전 기 공 학 과	"	6	
행정학부		"	6	
생태환경대학 (상주캠퍼스 소재)	생 태 환 경 시 스 템 학 부	"	5	
	생태환경관광학부(생물응용전공)	"	2	
	생태환경관광학부(생태관광전공)	"	2	
	레 저 스 포 츠 학 과	"	4	
	축 산 학 과	"	2	
	축 산 생 명 공 학 과	"	2	
	말 / 특 수 동 물 학 과	"	2	
과학기술대학 (상주캠퍼스 소재)	건 설 방 재 공 학 부	"	7	
	정 밀 기 계 공 학 과	"	4	
	자 동 차 공 학 부	"	5	
	소 프 트 웨 어 학 과	"	2	
	나 노 소 재 공 학 부	"	7	
	식 품 외 식 산 업 학 과	"	5	
	섬유패션디자인학부(섬유공학전공)	"	3	
	섬유패션디자인학부(패션디자인전공)	"	4	
	융 복 합 시 스 템 공 학 부	"	6	

- ※ 1. 모집인원은 당해학년 전체 입학정원의 2%이내,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이내에서 선발함
2. 외국에서 12년 이상 초·중·고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자, 북한이탈주민, 순수외국인(화교) 등은 위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선발할 수 있음
3. 사범대학의 경우, 입학정원 제한없는 정원외 모집(전교육과정이수자, 순수외국인 중 화교, 북한이탈주민)으로만 선발
4.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은 학생정원 조정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반드시 모집요강을 통해 확인**

6.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국외근무자의 자녀	① 입학원서(인터넷 접수 후 출력) ② 수학기간기록표, 해외학교학기기록표(본교서식) ③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④ 초·중·고 재학증명서(국내는 학교생활기록부) ⑤ 초·중·고 성적증명서(국내는 학교생활기록부) ⑥ (학기 개시와 종료일이 명기된)중·고등학교 학사일정표 ⑦ 가족관계증명서(학생 기준) ⑧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 학생) ⑨ 사실증명발급신청 위임장(부모, 학생) ⑩ 여권사본(부모, 학생) ⑪ 재외국민등록등본(부모, 학생) ⑫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 ⑬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국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이력(현지 취업자 해당) ⑭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자영업자 국외 세금납부증명서(현지 자영업자 해당) ⑮ 국외지사 설치인증 허가서 또는 국외직접투자 신고(승인)서(국외파견 재직자 해당)
전교육과정 이수자	① 입학원서(인터넷 접수 후 출력) ② 수학기간기록표, 해외학교학기기록표(본교서식) ③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④ 초·중·고 재학증명서(국내는 학교생활기록부) ⑤ 초·중·고 성적증명서(국내는 학교생활기록부) ⑥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 ⑦ 사실증명발급신청 위임장(학생) ⑧ 여권 사본(학생) ⑨ 재외국민등록부등본(학생)
순수외국인 중 화교	① 입학원서(인터넷 접수 후 출력) ② 수학기간기록표(본교서식) ③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④ 초·중·고 성적증명서(국내는 학교생활기록부) ⑤ 초·중·고 재학증명서(국내는 학교생활기록부) ⑥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외국정부가 발급한 증명서 ⑦ 외국국적증명서(부모, 학생의 시민권 사본 또는 여권 사본)
북한이탈주민	① 입학원서(인터넷 접수 후 출력) ② 수학기간기록표(본교서식) ③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④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⑤ 학력인정증명서(시·도 교육청 발급),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부모가 이혼했을 경우,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학생 기준 기본증명서를 제출

※ 미술학과 지원자의 경우 포트폴리오 및 서약서 제출